



서울시 전세버스 운송사업조합

수신자 전 회원사

(참 조)

제 목 **북촌 특별관리지역 전세버스 통행제한 재안내**

1. 종로구 관광체육과-17941호(2026.03.30)와 관련입니다.

2. 서울시 종로구에서는 「관광진흥법」 제48조의3(지속가능한 관광활성화)에 따라 교통 혼잡 및 불법 주정차 문제를 완화하고, 주거환경 보호 및 보행 중심의 관광환경 조성을 위해 전세버스 통행 제한구역을 지정하고, 2026년 1월 1일부터 전세버스 통행제한 위반 시 과태료 부과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.

3. 이와 관련하여, 각 사에서는 북촌 특별관리지역 내 전세버스 통행으로 적발되어 과태료 등 각종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= 아 래 =

□ 북촌 특별관리지역 전세버스 통행금지 시행

1) 시행일자 : 2026.1.1. (과태료 부과중)

2) 제한구역 : 북촌로, 북촌로5길, 창덕궁1길 약 2.3km

※ 붙임자료 참조

3) 제한시간 : 상시(토/일요일, 공휴일 포함)

4) 예외대상 : 제한구역 내 통근·통학버스, 마을버스, 공익 목적 차량,

경조사 등 일시 이동 차량

※ 통근·통학버스 및 경조사 등 일시 이동 차량의 경우 사전 승인

차량은 통행 가능 (종로구 관광체육과 02-2148-1857)

5) 승하차장

- 국립현대미술관 앞 (종로구 소격동 165-6 인근)
- 창덕궁 맞은편 (종로구 와룡동 139-4 인근)
- 탑골공원 서문 부근 (종로구 종로2가 37-3 인근)

6) 과태료

- 「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」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
[별표1] 에 따른 전세버스 운송사업용 자동차(16인승 이상 승합자동차)

구 분	과 태 료		
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위반
전세버스 통행 제한 위반 차량 소유자(상호)	300,000원	400,000원	500,000원
기한 내 납부시 20% 감경	240,000원	320,000원	400,000원
「종로구 관광진흥조례」 제20조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 2조의2 해당시 50% 감경	120,000원	160,000원	200,000원

※ 「관광진흥법」 제48조의3 제7항 및 「서울특별시 종로구 관광진흥조례」 제20조

※붙임 : 종로구청 공문 및 관련 붙임 자료 1부. [끝]

※붙임자료는 조합홈페이지(www.tourbus.or.kr)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서울시 전세버스운송사업
이 사 장 오 성



과 장 박영수 부 장 라영석 상 무 박호동 이사장

협조자

시행 서전버조 26- 72호 (2026.04.08) 접수 ()
 우 05510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19 (교통회관 11층) / <http://www.tourbus.or.kr>
 전화 02-422-0019 전송 02-418-0071 / 공개

"안전띠는 생명띠 정지선은 생명선"